

사단법인 한국국제사법학회
제154회 정기연구회 및
2022년 정기총회 자료집



일 시 : 2022. 3. 31.(목) 19:00 - 21:00

장 소 : Zoom을 통한 비대면회의

제154회 정기연구회 및 2022년 정기총회

사회 : 이종혁 교수(총무이사)

19:00	개회사 석광현 교수(한국국제사법학회장)
19:00 - 20:00	발 표 전응준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20:00 - 20:15	지정토론 김이경 부장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
20:15 - 20:30	전체토론
20:30 - 21:00	2022년 정기총회

발표문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의
국제사법적 쟁점에 관한 시론적 검토

전응준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의 국제사법적 쟁점에 관한 시론적 검토

전응준(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I. 서론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목적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과 함께 개인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것이다.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의 문언에는 이러한 취지가 잘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EU의 개인정보 보호법인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제1조(대상 및 목적)는 “본 규정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있어서 자연인의 보호에 관련된 규칙 및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련된 규칙을 정한다”라고 하고 있고, GDPR의 전체 명칭도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서 자연인의 보호 및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규정”이라고 하고 있어서¹⁾, 개인정보 보호법제가 일견 상호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추구한다는 점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개인정보의 이전은 크게 국내적 이전과 국외적 이전으로 나눌 수 있다. 국내적 이전은 한국법의 경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위탁, 재제공 등의 범주로 구분되어 각각 독립적인 규율을 받고 있으며, EU GDPR의 경우에는 처리(processing)이라는 개념에 포섭되어 다른 처리 태양과 함께 통일적으로 규율되고 있다. 국외 이전(EU의 경우 역외 이전)의 경우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17조 제3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매우 간단히 처리하고 있으나²⁾, EU GDPR은 제5장(제3국

1)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April 2016 on the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and repealing Directive 95/46/EC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2) 다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 규정인 제39조의12(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제1항 내지 제5항이 일반 규정보다 상세하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의한 데이터의 국외 이전을 규율하고 있다. 한편 정부 발의의 2021. 9.28.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외에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보호 수준을 갖추었다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등에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여 국외이전의 요건을 EU GDPR과 유사하게 규정하였다(개정안

및 국제기구로의 개인정보 이전)에서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EU GDPR의 기본적인 관점은 EU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제3국이 EU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에 대응하는 적절한 보호 수준(adequate level of protection)을 확보하고 있어야 EU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이전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GDPR은 제3국이 EU 집행위원회로부터 적정성 결정을 받은 경우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을 허용하고(제45조), 만약 제3국이 적정성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다음과 같은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을 조건으로 역외 이전을 허용한다(제46조). ① 구속력있는 기업규칙에 의한 이전(제46조 제2항 b호, 제47조) ② 표준개인정보보호조항에 의한 이전(제46조 제2항 c,d호) ③ 승인된 행동규약에 의한 이전(제46조 제2항 e호, 제40조) ④ 승인된 인증메커니즘에 의한 이전(제46조 제2항 f호, 제42조) ⑤ 승인된 계약에 의한 이전(제46조 제3항 a호). 이와 같이 제45조와 제46조의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은 금지된다. 다만 특정 상황에 대한 예외로서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 정보주체와 controller사이의 계약 이행 등을 위한 이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인 역외 이전을 허용한다(제49조).³⁾

GDPR 제45조의 적정성 결정이 없는 경우 대체로 EU 감독당국으로부터 승인 받은 표준정보보호조항(Standard Data Protection Clauses: SDPC 또는 Standard Contractual Clause: SCC),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Binding Corporate Rule: BCR), 승인받은 행동규약(Code of Conduct) 등이 사용된

제28조의8 및 제28조의9 신설).

3) controller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대응하는 개념이나 의미가 일부 상이하다. EU GDPR의 controller는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수단을 결정하는 주체로 정의되므로 정책 결정만 하고 데이터의 구체적, 물리적 처리에 관여하지 않는 자도 controller에 해당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타인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직접 또는 위탁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실제로 처리하는 자가 개인정보처리자가 된다. GDPR의 processor는 controller를 대신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연인이나 법인 등을 말한다. processor가 데이터를 처리하더라도 전체적인 책임은 controller에게 있기 때문에 controller는 processor가 개인정보 보호법령을 준수하는지 감독을 하여야 하고, 만약 controller가 processor의 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는 내용이 위수탁계약에 있다면 이들 관계는 법적으로 공동 controller(joint controller)으로 파악된다. 하위 processor(subprocessor)는 processor로부터 그 업무를 다시 수탁받은 자이다. GDPR의 controller를 관리자, processor를 처리자 또는 수탁처리자라고 번역하기도 하나 본 연구에서는 원문 그대로 controller, processor로 표기하기로 한다.

다. 빈도수로는 SCC(SDPC)를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2021. 12. 17. EU 집행위원회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에 대해 최종적으로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을 한 것에 대응하여,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국제재판관할, 준거법 등의 국제사법적 쟁점을 시론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는 EU 적정성 결정에 근거하여 국내에 이전된 EU 정보주체의 데이터 처리에 대한 준거법, 개인정보 침해(data breach)시 국제 재판관할 등의 쟁점을 논하고, 두 번째로 이번 적정성 결정에서 제외된 신용정보 분야 등에서는 종래와 같이 SCC를 사용하여 데이터의 역외 이전을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⁴⁾ SCC 관련 국제재판관할, 준거법 등의 쟁점을 검토하고자 하며 세 번째로 GDPR의 효력을 직접 받는 한국 data controller의 사례가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 EU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개인정보 침해 시 국제사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네 번째로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국내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소비자계약성 등의 국제사법적 쟁점을 검토하기로 한다.

II. EU 적정성 결정에 근거하여 국내에 EU 정보주체의 데이터가 역외 이전된 경우⁵⁾

1. GDPR상 ‘제3국(또는 국제기구)으로의 역외 이전’의 판단기준

- GDPR은 제5장에서 ‘개인정보의 제3국(또는 국제기구)으로 역외 이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위 개념에 대한 법적 정의를 하지는 않았다. 그로 인해 ‘역외 이전’ 개념에 대한 상당한 오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 개념은 EU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제3국으로 이전하는 모든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제3국의 controller가 EU 역내의 controller 내지 processor를 통하지 않고 데이터를 EU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수집하는 것은 GDPR 제5장의 역외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신용정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할범위가 아니어서 이번 적정성 결정에서 제외되었다. 적정성 결정은 3년 ~ 4년 마다 재검토되므로 추후 적정성 결정에 신용정보도 포함될 수 있다.

5) EU에서는 개인정보를 personal data 또는 data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해 personal information이라는 용어를 많이 쓴다. 본 고에서는 개인정보, 데이터를 혼용하기로 한다.

- EU 개인정보보호이사회(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 EDPB)는 GDPR 제5장이 적용되는 ‘역외 이전’의 개념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첩적 요건으로 정리하였다.⁶⁾ 이는 GDPR 제3조와 제5장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론이다. ⁷⁾

- ① controller 또는 processor(이들을 통칭 “exporter”라고 함)가 관련 개인정보처리에 대하여 GDPR의 직접 적용을 받을 것. 즉 역내 controller 또는 processor가 GDPR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받거나 역외 controller 또는 processor가 GDPR 제3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후문의 경우 역외 exporter가 다시 데이터를 국외로 이전하려면 GDPR 제5장을 준수하여야 한다(예컨대 GDPR 제3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한국 controller가 다시 EU 정보주체의 데이터를 미국으로 이전하는 경우).
- ② controller 또는 processor(exporter)가 전송을 통해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별도 controller, 공동 controller 또는 processor(통칭 “importer”라고 함)가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그러므로 정보주체가 역외 수령인(recipient)에게 직접(자발적으로)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개인정보를 전송하거나 제공하는 controller 내지 processor 즉 exporter가 없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의 역외이전에 해당하려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controller 내지 processor(exporter)와 개인정보를 수령하거나 개인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받은 별도의 controller 내지 processor(importer)가 존재해야 한다.
- ③ importer가 제3국에 있거나 국제기구에 해당할 것(exporter의 개인정보

6) EDPB Guidelines, “Guidelines 05/2021 on the Interplay between the application of Article 3 and the provisions on international transfers as per Chapter V of the GDPR”, Adopted on 18 November 2021

7) GDPR 제3조(영토적 효력범위)

1. 본 규정은 유럽연합 역내의 controller 또는 processor의 사업장의 활동에 수반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적용되고, 이 때 해당 처리가 유럽연합 역내 또는 역외에서 이루어지는지 여부는 관계없다.

2. 본 규정은 개인정보의 처리가 다음 각 호와 관련되는 경우, 유럽연합 역내에 설립되지 않은 controller 또는 processor가 유럽연합 역내에 거주하는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도 적용된다

(a) 정보주체가 지불을 해야 하는지에 관계없이 유럽연합 역내의 정보주체에게 재화와 용역을 제공

(b) 유럽연합 역내에서 발생하는 정보주체의 행태를 모니터링

처리가 제3조에 따라 직접 적용을 받는지 관계없음). 만약 EU역외에 있는 importer가 EU시장에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위 importer는 GDPR 제3조 제2항에 따라 GDPR를 직접 적용받는다. 이 경우에도 위 importer와 역내 exporter 간의 데이터 이전은 역외이전에 해당하여 GDPR 제5장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⁸⁾

적정성 결정 적용 대상



- 따라서 EU 역외 지역의 controller가 역내 exporter를 통하지 않고 직접 EU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역외 이전에 관한 GDPR 제5장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EU 역외 지역의 controller는 적정성 결정과 무관하게 EU 역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할 수 있고 GDPR 제3조 제2항에 따라 GDPR의 데이터 처리에 관한 규정을 직접 적용받는다.
- 나아가 이러한 데이터 역외 이전은 GDPR 제6조의 적법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⁹⁾ 그러므로 역내 exporter(controller 내지 processor)가 역외 importer(controller 내지 processor)에게 데이터를 역외 이전하는 단계는

8) 한국인터넷진흥원 2022.3.3. 웨비나 자료에서 인용함

9) Christopher Kuner, Lee Bygrave, Christopher Docksey, "THE 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 A Commentary", Oxford University Press, 2020, 762면. EDPB-EDPS의 공동의견서는 "EU로부터 개인정보를 이전하고자 하는 미국 CLOUD Act에 기한 모든 명령은 GDPR 제6조와 GDPR 제49조의 법적 근거를 갖추어야 적법하다"라고 하였다. EDPB-EDPS Joint Response Cloud Act, 3면 참고.

① 역내 exporter가 역내 정보주체에게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GDPR 제6조 적법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② 데이터를 역외이전 과정에서 다시 GDPR 제6조 적법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③ GDPR 제5장에 따라 데이터 역외이전에 관한 적절한 수준의 보호조치(적정성 결정, 적절한 안전조치, 일정한 경우의 예외 등)를 갖추어야 한다.

2. EU 적정성 결정의 성격과 효과

- EU 적정성 결정은 EU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임으로 공법적 성격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데이터의 역외 이전은 기본적으로 역내 controller(또는 processor)와 역외 controller(또는 processor) 사이의 사적인 데이터 처리 계약(Data Processing Agreement: DPA)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사법적 요소가 있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적정성 결정에 기한 개인정보 역외 이전에 대하여 분쟁의 준거법, 재판관할 등의 국제사법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명확한 문헌을 발견하지는 못하였으나 사건으로는, GDPR의 적정성 결정에 근거하여 EU 개인정보가 한국의 controller에게 이전된 경우 EU역외에 있는 한국 controller에게 GDPR 제3조가 적용되지 않아 한국으로 이전된 데이터 및 해당 한국 controller에게는 더 이상 GDPR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한국 controller가 EU 역내에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지 않거나 EU 정보주체의 행태를 모니터링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¹⁰⁾ 관련 EDPB 의견서는 “개인정보가 EU역외로 이전되어 EU 역외에서 접근할 수 있게 된 경우 EU 법률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고¹¹⁾,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명자료도 위와 유사하다.¹²⁾

10) GDPR 제3조 영토적 효력범위

제1항 본 규정은 유럽연합 역내의 controller 또는 processor의 사업장의 활동에 수반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적용되고, 이 때 해당 처리가 유럽연합 역내 또는 역외에서 이루어지는지 여부는 관계없다. 제2항 본 규정은 개인정보의 처리가 다음 각 호와 관련되는 경우, 유럽연합 역내에 설립되지 않은 controller 또는 processor가 유럽연합 역내에 거주하는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도 적용된다.

(a) 정보주체가 지불을 해야 하는지에 관계없이 유럽연합 역내의 정보주체에게 재화와 용역을 제공

(b) 유럽연합 역내에서 발생하는 정보주체의 행태를 모니터링

11) EDPB Guidelines, “Guidelines 05/2021 on the Interplay between the application of Article 3 and the provisions on international transfers as per Chapter V of the GDPR”, Adopted on 18 November 2021, 3면.

- GDPR 제3조의 요건에 따라 분석하여 보면, 위 한국 controller는 EU 역외에 있으므로 GDPR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EU 역내의 정보주체에게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지 않거나 EU 역내에서 발생하는 정보주체의 행태를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 한 GDPR 제3조 제2항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EU 역내 controller로부터 단순히 데이터를 역외 이전받은 한국의 controller는 GDPR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한국으로 이전된 데이터의 처리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받는다고 해석된다.

3. 국제재판관할, 준거법의 결정

3.1 소송 유형의 분류

-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는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으로 정보주체의 열람권, 제3자 제공 내역 요구권, 처리중지권 등의 행사와 개인정보 침해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를 논하기로 한다.

3.2 정보주체의 열람권, 처리중지권 등 행사의 경우

- EU 정보주체가 한국의 controller에게 열람권, 제3자 제공 내역 공개, 정보 삭제권 등을 청구하는 경우를 예정한다. GDPR은 제3장에서 이러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5장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양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주체의 권리는 상당히 유사하나 현행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은 아직 개인정보 이동권(GDPR 제20조), 자동적 의사결정에 반대할 권리(GDPR 제22조)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¹³⁾

3.2.1 국제재판관할

- EU 정보주체가 한국 controller에게 소제기를 하는 경우 국제사법 제2조에 따른 일반관할 규정에 따라 한국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생각된다.¹⁴⁾

12) 한국인터넷진흥원, “한-EU 적정성 결정 설명회(‘22.3.3.) 주요내용 요약 및 발표자료” (https://gdpr.kisa.or.kr/gdpr/bbs/selectArticleList.do?bbsId=BBSMSTR_000000000065, 2022.3.30. 최종 접속)

13) 정부가 2021. 9.28.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는 이러한 권리가 규정되어 있다.

14) 이종혁, “개인정보관련소송의 국제사법 문제에 관한 시론적 연구- 개인정보관련소송의 유형과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국제거래법연구 제28집 제2호, 2019, 151면

일부 견해는 개인정보 삭제 등의 청구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모든 비계약상 청구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대체로 불법행위지의 특별관할이 인정된다고 하나¹⁵⁾, 정보주체의 열람권, 정보삭제권, 처리중지권 등을 언제나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청구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

- GDPR 제79조 제2항에 따라, EU 역내 controller의 사업장(establishment)이 있는 회원국 법원 내지 정보주체의 일상거소(habitual residence)가 있는 회원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¹⁶⁾ 이를 언급하는 문헌을 찾지 못하였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GDPR의 적정성 결정에 근거하여 EU 개인정보가 한국의 controller에게 이전된 경우 GDPR 제3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한 해당 한국의 controller에게 GDPR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때에는 GDPR 제79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 적정성 결정에 근거한 역외이전의 경우 EU 정보주체와 한국의 controller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이 없으므로(원칙적으로 정보주체와 EU 역내 controller/processor 간의 관계만 존재) 성질상 관할합의가 존재하기 어려우며, 정보주체가 소비자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계약에 관한 국제사법 제27조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한국의 controller가 EU 역내에 있는 자신의 processor로부터 개인정보를 역외이전하는 경우 보충적으로 EU 정보주체와 한국 controller 사이에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존재할 수 있는바, 이 경우에는 브뤼셀 I 제17조의 소비자계약 조항에 기하여 GDPR 제79조 제2항에 따른 관할법원이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3.2.2 준거법

- 원칙적으로 EU 정보주체와 한국의 controller 사이에는 특별한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준거법 합의는 성질상 어렵고 계약에 관한 국제사법 규

15) 이종혁, 위의 글, 158면

16) GDPR 제79조 Proceedings against a controller or a processor shall be brought before the courts of the Member State where the controller or processor has an establishment. Alternatively, such proceedings may be brought before the courts of the Member State where the data subject has his or her habitual residence, unless the controller or processor is a public authority of a Member State acting in the exercise of its public powers.

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다만 전술한 바와 한국 controller와 EU 정보주체 간에 별도의 이용약관 등이 있을 수는 있으므로 이들의 관계가 소비자계약이고 한국 controller의 영업활동이 EU 역내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강행법규인 GDPR의 관련 규정이 준거법으로 결정된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GDPR 제3조 제2항에 따라 한국의 controller가 GDPR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GDPR을 국제적 강행규정으로 보아 관련조항을 준거법으로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GDPR을 국제적 강행규정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EU내에서는 GDPR의 인권보호적 성격, 제3조의 영토적 효력 범위 확대 등을 고려하여 GDPR을 국제적 강행규정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¹⁷⁾

- 양자간에 계약관계가 없고 GDPR 제3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면 EU 정보주체와 한국의 controller 간의 법률관계 성질은 사무관리와 유사한 관계라고 보인다. 국제사법 제30조 사무관리 규정을 유추하여 데이터가 처리되고 있는 사무관리지법인 한국법이 준거법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 SCC에 의해 데이터가 역외 이전된 경우 대체로 EU 회원국 법과 EU 회원국 법원(또는 정보주체의 일상거소지 법원)이 준거법과 전속적 합의관할 법원이 된다(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SCC에 의해 데이터가 역외 이전된 경우에 비하여 적정성 결정에 의해 데이터가 이전된 경우 EU 정보주체의 권리행사가 불리해진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3.3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 EU 정보주체가 한국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한국 controller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경우를 예정한다.

3.3.1 국제재판관할

- 원칙적으로 국제사법 제2조에 따른 불법행위지의 특별관할인 한국법원에게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행동지와 결과발생지는 실제 개인정보

17) Maja Brkan, "Data Protection and Conflict-of-laws: A Challenging Relationship", European Data Protection Law Review, Vol.2, No.3, 2016, 339면; 이종혁, 위의 글, 161면

침해사고의 태양과 관련이 되어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행동지의 경우 보호의무를 위반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재지(여기서는 한국), 제3자가 해킹을 한 국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위반을 기화로 개인정보유출에 개입한 직원이 행동을 한 국가 등이 되고, 결과발생지는 ‘법익 침해 당시 당해 법익의 소재지’로 보고 해당 정보주체의 일상거소지를 법익의 소재지로 볼 수 있다(여기서는 EU).¹⁸⁾ 이러한 경우 원고인 EU 정보주체는 행동지와 결과발생지 중 어디에서든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¹⁹⁾

3.3.2 준거법

- 원칙적으로 국제사법 제32조에 따라 불법행위지법이 준거법이 된다. 침해 태양에 따라 행동지와 결과발생지가 달라지는 경우 어느 곳을 불법행위지로 정할 것인지 논란이 있다.²⁰⁾ 개인정보 유출 등의 경우 행동지는 대체로 한국이 되고 결과발생지는 법익침해 당시 법익 소재지인 피해자의 일상거소인 EU가 될 것이다. 학설로는, 법익의 보호가 행위의 불법보다 전면에서 행동지와 결과발생지가 상이한 경우 결과발생지를 우선하자는 견해, 결과발생지를 불법행위지로 정하되 국제사법 제8조에 의하여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으로 정하는 견해, 피해자로 하여금 행동지와 결과발생지 중에서 택일하도록 하고 법원이 국제사법 제8조에 의하여 당해 사안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을 발굴하도록 하는 견해 등이 있다.²¹⁾ 결과발생지를 우선한다면 피해자 일상거소지법인 GDPR이 준거법으로 결정된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해석은 적정성 결정의 취지 즉 적정한 보호수준이 보장된 제3국으로 EU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이전된 경우 해당 데이터의 보호, 관리는 제3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는 의미가 상실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 EU 정보주체와 한국의 controller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없으므로 종속적 연결은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GDPR의 국제적 강행규정성 여부는 전술한 바와 같다.

18) 한승수, “개인정보유출에 기한 손해배상 사건과 소송상 준거법”, 법학연구 24(1),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78면 ~79면

19) 이종혁, 위의 글, 158면

20) 한승수, 위의 글, 79면

21) 석광현, “국제사법 해설”, 박영사, 2013, 394면

III. SCC에 의해 역외 이전된 경우

1. 논의의 실익

- 이번 EU 적정성 결정에서 제외된 신용정보 분야에서는 종래와 같이 SCC 등을 사용하여야 하고, EU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여 GDPR을 직접 적용받는 한국 controller가 다시 제3국(적정성 결정을 받지 않은 국가에 한함)으로 데이터를 재이전하는 경우에도 SCC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GDPR상 한국 controller는 여전히 SCC 등의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므로, SCC에 의해 EU 역외로 데이터가 이전되는 상황을 상정하여 준거법, 국제재판관할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2. SCC의 유형

- 2021. 6. 4. EU 집행위원회는 GDPR에 따른 개인정보의 EU 역외이전을 위한 SCC의 최종 개정본을 발표하였다. 위 개정은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의 Schrems II (Case C311/18 Data Protection Commissioner v. Facebook Ireland Limited and Maximilian Schrems)의 판결내용을 반영하고 최근 비즈니스의 형태를 고려하여 SCC의 내용과 종류를 다양화하였다.
- 구 SCC는 controller와 controller(controller to controller)와 controller와 processor(controller to processor)의 2개의 이전방식만을 고려하였으나, 개정 SCC는 이에 더하여 processor와 controller(processor to controller), processor와 processor(processor to processor)의 이전방식을 포함하여 총 4가지 방식의 방식을 모듈화하였다.
 - module 1: controller에서 controller로 이전하는 경우
 - module 2: controller에서 processor로 이전하는 경우
 - module 3: processor에서 processor로 이전하는 경우
 - module 4: processor에서 controller로 이전하는 경우

- 모듈 1은 EU 역내외에 있는 controller 간에 데이터를 이전하는 전통적인 상황을 규율한다. 모듈 2는 EU 역내에 있는 controller가 EU 역외에 있는 자신의 processor에게 데이터를 이전(위탁)하는 형태를 규율한다. 모듈 3은 실질적으로 EU 역내의 processor가 EU 역외에 있는 자신의 sub-processor(하위 수탁처리자)에게 데이터 처리를 위탁하는 형태를 규율한다.
- 모듈 4은 EU 역외에 있는 controller(importer)가 EU 역내에 있는 자신의 processor(exports)로부터 데이터를 역외 이전 받는 방식을 규율하게 된다. 여기의 EU 역외 controller는 GDPR의 적용을 받지 않는 controller도 포함하고 있는바, 이는 위 controller가 GDPR 제3조 제2항의 영토적 적용 범위에 포섭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data importer인 EU 역외 controller는 EU 역내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EU 역내 정보주체의 행태를 모니터링하는 자가 아닐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모듈 4는 원칙적으로 GDPR의 효력범위를 넘어서는 데이터 이전 방식을 SCC의 형태로 규율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된다.

3. SCC에서 규정된 준거법, 국제재판관할의 표준서식

- 준거법과 국제재판관할은 SCC 제17조, 제18조에 규정되어 있다.

3.1 준거법 표준조항²²⁾

22) *Clause 17 Governing law*

MODULE ONE: Transfer controller to controller

MODULE TWO: Transfer controller to processor

MODULE THREE: Transfer processor to processor

[OPTION 1: These Clauses shall be governed by the law of one of the EU Member States, provided such law allows for third-party beneficiary rights. The Parties agree that this shall be the law of _____ (*specify Member State*).]

[OPTION 2 (for Modules Two and Three): These Clauses shall be governed by the law of the EU Member State in which the data exporter is established. Where such law does not allow for third-party beneficiary rights, they shall be governed by the law of another EU Member State that does allow for third-party beneficiary rights. The Parties agree that this shall be the law of _____ (*specify Member State*).]

제17조 준거법

모듈 1, 모듈 2, 모듈 3의 경우

[선택1] 본 조항들은 EU회원국 중의 한 국가의 법률에 규율된다. 다만, 위 법률이 제3자 수익권(third-party beneficiary right)을 허용하여야 한다. 모든 당사자는 준거법이 (회원국을 특정할 것)의 법률인 것에 동의한다.

[선택2] (모듈 2와 3의 경우) 본 조항들은 data exporter가 설립된 EU 회원국의 법률에 의해 규율된다. 만약 위 회원국의 법률이 제3자 수익권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용하는 다른 EU 회원국의 법률에 의해 규율된다. 모든 당사자는 준거법이 (회원국을 특정할 것)의 법률인 것에 동의한다.

모듈 4의 경우

본 조항들은 제3자 수익권을 허용하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규율된다. 모든 당사자는 준거법이 (국가를 특정할 것)의 법률인 것에 동의한다.

- 여기서 third-party는 자신의 데이터가 이전되는 EU 정보주체를 말하며 정보주체는 SCC에 기하여 data exporter, data importer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민법 제539조의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유사하다고 보인다.
- module 4 즉 EU 역내 processor에서 역외 controller에게 역외 이전하는 경우에는 EU 회원국이 아닌 예컨대 한국법도 지정할 수 있다. 이는 EU 역외 controller가 GDPR의 효력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 외 모듈 1,2,3의 경우 준거법은 EU 회원국의 법률로 기재하여야 한다.

3.2 재판관할 표준조항²³⁾

MODULE FOUR: Transfer processor to controller

These Clauses shall be governed by the law of a country allowing for third-party beneficiary rights. The Parties agree that this shall be the law of _____ (*specify country*).

23) Clause 18 *Choice of forum and jurisdiction*

MODULE ONE: Transfer controller to controller

MODULE TWO: Transfer controller to processor

제18조 법정의 선택과 재판관할

module 1,2,3

- (a) 본 조항들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어느 EU 회원국 법원에 의해 해결된다.
- (b) 모든 당사자는 위 전속적 합의관할 법원이 (회원국을 특정할 것)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 (c) 정보주체는 또한 그의 일상거소지 법원에도 data exporter 또는 data importer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d) 모든 당사자는 위 재판관할에 복종하기로 동의한다.

모듈 4

본 조항들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국가를 특정할 것)의 법원에 의해 해결된다.

- 모듈 1,2,3의 경우 특정 EU 회원국 법원으로 전속적 합의관할이 기재되지만 정보주체는 추가적으로 그의 일상거소지 법원에 대해서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는 GDPR 제79조 제2항의 내용과 유사한 것이다.
- 모듈 4의 경우 EU 회원국이 아닌 예컨대 한국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로 정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모듈 4의 경우는 EU 역외 controller 즉 한국의 controller가 GDPR 제3조 제2항의 범위 외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한국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4. 위 SCC에서 규정한 전속적 합의관할의 유효성

-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일반론
 - 국제재판관할은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MODULE THREE: Transfer processor to processor

- (a) Any dispute arising from these Clauses shall be resolved by the courts of an EU Member State. The Parties agree that those shall be the courts of _____ (*specify Member State*).
- (b) A data subject may also bring legal proceedings against the data exporter and/or data importer before the courts of the Member State in which he/she has his/her habitual residence.
- (c) The Parties agree to submit themselves to the jurisdiction of such courts.

MODULE FOUR: Transfer processor to controller

Any dispute arising from these Clauses shall be resolved by the courts of _____ (*specify country*).

기본이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것인지는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 사이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²⁴⁾

-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효력

-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되고, 그와 같은 전속적인 관할 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관할 합의는 유효하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 참조).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법정지의 국제민사소송법규에 의한다는 주장과 궤를 같이 한다.

- controller, processor 관점에서 본 전속적 합의관할의 유효성

- 모듈 1, 2의 경우 data controller가 EU 역내에 있으므로 GDPR의 효력이 controller에게 미치는 상황이고, 모듈 3은 processor 간의 데이터 이전(위탁)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지만 processor(data exporter)에게 데이터 처리를 위탁한 controller가 EU 역내에 있으므로(나아가 data importer는 subprocessor일 수 있음) 위 controller를 통해 GDPR의 구속력이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모듈 1,2,3의 전속적 합의관할 및 정보주체를 위한 추가적 합의관할은 GDPR 제79조 제2항의 취지에 부합한다. 나아가 위 대법원 판결의 4가지 요건을 검토하여 보면 SCC상의 전속적 합의관할은 유

24) 이규호,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에 관한 국제사법상 쟁점 - 서울고등법원 2017. 2. 16. 선고 2015 나 2065729 판결을 중심으로 -”, 국제사법학회연구대회, 2019. 6. 15., 국제사법학회, http://www.pilaj.jp/data/conference/132_SUMM/132th_Summary_002.pdf, 2022.3.30. 최종접속)

효하다고 생각된다(일단 데이터가 EU 역내에서 수집되어 처리된다는 점은 EU 회원국 법원에 합리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된다. 다만 그 후 데이터 처리가 EU 역외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은 그 반대의 사정에 해당한다).²⁵⁾ 그리고 이러한 SCC상의 전속적 합의관할 규정을 무효로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GDPR 제3조의 영토적 효력 범위를 부인하게 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모듈 4의 경우, 관할법원이 한국법원으로 지정된 때에는 한국 controller 관점에서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관할법원이 EU 회원국으로 지정된 경우라면 전속적 합의관할의 유효성이 문제될 것이나 위 대법원 판결의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전속적 합의관할을 유효로 볼 수 있다. 다만, 한국 controller가 GDPR 제3조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GDPR의 구속을 받지 않는 한국 controller 관점에서 볼 때 모듈 4의 합의관할은 모듈 1,2,3에 비해 불이익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 데이터 처리가 모두 한국에서 이루어진다는 점도 EU 회원국 법원에 분쟁에 관한 합리적 관련성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이므로 이러한 국제재판관할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

- EU 정보주체의 관점에서 본 전속적 합의관할의 유효성

- 모듈1,2,3은 정보주체에게 그의 일상거소지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추가적인 관할을 부여하였으므로 이 경우 전속적 합의관할의 유효성은 문제되지 않는다.
- 모듈 4의 상황은 원칙적으로 EU 역외(예컨대 한국)의 controller가 GDPR의 구속력을 받지 않는 경우이므로(GDPR 제3조 제2항 비적용), EU 정보주체는 GDPR 제79조 제2항 후문에서 규정한 추가적인 관할법원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만약 모듈 4의 상황에서 관할법원이 한국법원으로 지정되었다면 브뤼셀 I 규정 제17조 소비자계약(consumer contracts)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건으로 모듈 4의 상황은 브뤼셀 I

25) 서울고등법원 2017. 2. 16. 선고 2015나2065729판결(상고)은 구글 서비스의 제작·운영 등 주요 부분이 피고 구글 Inc. 본사 소재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캘리포니아주 법원 내지 연방법원이 이 사건 분쟁에 관한 합리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주요 근거로 들었다.

규정 제17조 소비자계약의 적용 가능성은 있다고 보인다.

- SCC를 약관으로 보는 관점에서 전속적 합의관할의 유효성
 - 관할합의의 허용조건의 준거법을 한국법이라고 보면, SCC의 준거법이 EU 회원국법으로 지정된 경우 한국 약관규제법 제14조 제1항 적용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전속적 합의관할이 일단 유효하다고 판단되었다면 다시 약관규제법 제14조 제1항의 적용될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보인다.²⁶⁾ SCC는 EU 법률에서 기본적 권리로 파악되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종국적으로 EU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을 위한 법적 도구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는 약관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전속적 관할합의 조항을 부당하게 불리하다거나 불공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준거법

5.1 정보주체와 controller 간의 소송

- EU 정보주체는 SCC의 third-party beneficiary 규정에 의해 한국의 controller에게 소를 제기할 수 있다. third-party beneficiary 권리가 인정되는 EU 회원국 국가의 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었다면 EU 정보주체는 해당 EU 회원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주장할 수 있다.
-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의 국제적 강행규정성 여부
 -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을 국제사법 제7조의 국제적 강행규정을 보아 위 준거법 합의를 부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본다. 국제적 강행규정에는 ① 국가적, 경제정책 등 공익에 관한 규범과 ② 계약관계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규정이 포함되는데, 그 판단의 핵심은 입법자의 의사이다.²⁷⁾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입법자가 위 법률(특히 정보주체의 권리 조항)을 국제적 강행규범으로 인식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역외 적용 규정 등 영토적 효력 범위를 규정한 내용도 없기 때문에 현재 대체적 견해는 국제적 강행규정성에 부정적

26) 이종혁, 위의 글, 156면

27) 한승수, 위의 글, 91면

이다.²⁸⁾ 서울고등법원 2017. 2. 16. 선고 2015나2065729판결(상고)에서 “외국법이 준거법인 경우에도 적용하여야 할 우리 법의 강행규정이란, 국제사법 제7조 자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 입법목적에 고려하여야 하고, 이는 그 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법체계와 사회질서 및 거래안전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법 규정 자체에서 준거법과 관계없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거나 또는 자신의 국제적 또는 영토적 적용 범위를 스스로 규율하고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라고 판시하여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의 국제적 강행규정성을 부정한 바 있다.

- 국제적인 개인정보 관련 소송에서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의 국제적 강행규정성을 검토할 시기가 올 수 있다고 생각된다. 향후 국경 밖으로 데이터가 자유롭게 이전하는 상황이 도래하는 경우 GDPR 제3조, 개정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의 규정을 고려하여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의 영토적 적용범위를 국외로 일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²⁹⁾ 만약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범위가 국외로 일부 확대되는 경우 국제사법에도 개인정보 영역에 대한 국제적 강행규범성을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 EU에서는 해석상 GDPR 규정의 국제적 강행규정성을 인정하여 준거법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입법론적으로도 GDPR 제3조 영토적 효력범위 규정에 GDPR의 국제적 강행규정성(mandatory overriding provision)을 명문화하자는 견해가 발견된다.³⁰⁾

5.2 data exporter와 data importer 간의 소송

- EU 회원국법을 준거법으로 합의한 경우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국제적 강행규정인지 문제될 수 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국제적 강행규정성을 부정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GDPR 제3조가 규정내용상 국제적 강행규범성이 있다고 보인다. SCC 계약의 당사자들은 controller 내지

28) 이종혁, 위의 글, 161면; 한승수, 위의 글, 91면

29) 일본 개인정보보호법(2020. 6.5. 개정, 2022. 4.1. 시행)은 ‘적용범위’ 규정을 신설하였다.

제75조(적용범위) 이 법률은 개인정보 취급사업자 등이 국내에 있는 자에 대한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국내에 있는 자를 본인으로 하는 개인정보, 해당 개인정보로 취득하게 되는 개인정보 또는 해당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작성된 가명가공정보 또는 익명가공정보를 외국에서 취급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30) Maja Brkan, 위의 글, 341면

processor 이므로 수동적 소비자로 보기 어려워 성질상 소비자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EU 회원국법을 준거법으로 한 합의는 유효하다.

IV. 한국의 controller가 GDPR의 적용을 직접 받는 경우

1. EU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경우 GDPR의 효력

- 국내 일부 기업은 EU역내의 controller 내지 processor로부터 데이터를 이전받는 형식을 취하지 않고 EU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삼성전자, 일부 모바일 게임회사 등).
- EDPB(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EU 역내의 정보주체에게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거나 EU 역내에서 발생하는 정보주체의 행태를 모니터링하면서 직접 EU 역내에 거주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 등 처리하는 한국 controller는 GDPR 제3조 제2항에 따라 GDPR의 효력에 직접 구속된다. 그러나 한국 controller가 EU 역내의 exporter(controller 내지 processor)로부터 데이터를 이전받지 않고 직접 EU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GDPR상의 역외 이전에 해당하지 않아 이 경우 역외이전에 관한 GDPR 제5장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³¹⁾
- 한국 기업들도 개인정보를 외국에 재이전 내지 위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GDPR의 효력을 직접 적용받는 한국 controller가 적정성 결정을 받지 않은 제3국(현재 대표적으로 미국)으로 EU 정보주체의 데이터를 이전하는 경우 SCC 등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만약 미국이 EU로부터 새로운 적정성 결정을 받게 된다면 위 사례에서 한국 controller는 적정성 결정의 효과에 기대어 추가적인 보호조치없이 미국에 EU 정보주체의 데이터를 재이전할 수 있다.

31) EDPB Guidelines 05/2021 on the Interplay between the application of Article 3 and the provisions on international transfers as per Chapter V of the GDPR, Adopted on 18 November 2021, 5면 example 1 등

2. EU 정보주체와 한국 controller 사이의 소송

2.1 국제재판관할

- GDPR 제3조 제2항에 따라 GDPR의 효력이 미치므로 GDPR 제79조 제2항 후문이 적용되어 EU 정보주체는 자신의 일상거소지(habitual residence) 법원에 한국 controller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오스트리아 대법원도 GDPR 제79조 제2항에 따라 EU 역내의 모든 정보주체는 자신의 거주지가 있는 회원국의 법원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³²⁾ 위 사건에서 피고 페이스북 아일랜드는, GDPR 위반 여부에 관한 청구는 본사 소재지인 아일랜드에서 제기되어야 하고 특히 정보주체의 삭제권, 열람권 등은 개인정보보호 감독당국(Data Protection Authority: DPA)에 대해 제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심 빈 민사법원은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재판관할권을 부정하였으나, 2심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DPA를 상대로 한 시정조치와 controller에 대한 민사소송은 병렬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빈 민사법원은 GDPR상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해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 한편 한국 controller가 EU 역내에서 영업을 하는 EU 지사, 지점 등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 CJEU Google Spain 판결의 법리에 따라 제79조 제2항 전문의 ‘establishment’를 EU ‘역내’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다고 보인다. 이를 긍정한다면 한국 controller의 EU 지사 등이 있는 EU 회원국 법원에도 재판관할이 발생한다.

- CJEU Google Spain 판결

- right to be forgotten에 관한 사건으로서 구글 Inc와 구글 스페인이 공동피고였다. EU DPD(Data Protection Directive, GDPR 이전의 지침)을 이행하는 스페인법을 미국 소재 구글 Inc에 역외적용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었다. CJEU는 검색엔진 운영자가 그 검색엔진에 의하여 제공

32) OGH - 6 Ob 91/19d

되는 광고 공간을 홍보하거나 판매할 의도를 가지고 그 활동도 회원국의 거주자를 지향하는 자회사나 지사(구글 스페인)를 회원국에 설립한 경우 DPD 제4조 제1항 (a)호에 따라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controller의 설립 활동의 맥락 속에서 개인정보가 처리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판결문 para 60).³³⁾

- EU DPD 제4조 제1항은 관리자(controller)가 외국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EU회원국의 국내법을 적용, 즉 역외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세 가지 규정하고 있다. 이 사안의 경우 그 중 첫 번째인 조건(제4조 제1항 (a)호) “회원국의 영토에서 관리자의 설립 활동의 맥락 속에서 개인정보가 처리된 경우”(the processing is carried out in the context of the activities of an establishment of the controller on the territory of the Member State)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2.2 준거법

- 준거법은 GDPR이라고 판단된다. GDPR은 역외적용이 가능하고, 논란이 있지만 국제적 강행규범성이 있다고 생각되므로, 가사 별도의 이용약관 등에 의해 한국법으로 준거법을 합의하더라도 로마 I 규정 제9조의 국제적 강행규정에 따라 관련 GDPR 조항이 준거법으로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EU 정보주체의 관계와 한국 controller의 관계가 소비자계약인 경우에는 로마 I 규정 제6조 소비자계약 규정에 의해 관련 GDPR 조항이 준거법을 결정될 것으로 생각된다.
- 개인정보 유출 등에 기한 불법행위청구의 경우 앞서와 같은 논리로 원칙적으로 국제사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불법행위지법이 준거법이 된다. 국제사법 제32조 제3항 종속적 연결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면 GDPR이 준거법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V.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데이터 처리 형태

33) 문재완, 인터넷상 인격권 침해와 시간의 경과 - 유럽연합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외법논집 제39권 제1호, 2015.2, 144면

1. 외국기업의 데이터 처리 형태

-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의 국내 정보주체 데이터 처리 형태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Google, Facebook과 같이 외국 본사가 직접 개인정보처리자가 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빈도는 낮지만 Netflix와 같이 국내 자회사(넷플릭스서비스스코리아)가 개인정보처리자(controller)가 되고 미국 본사가 데이터 수탁자(processor)가 되는 경우이다. 많은 경우 AWS(Amazon Web Service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Azure), 구글 클라우드 등의 클라우드 서비스사업자를 (sub)processor로 두고 있다.
- Google은 전세계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Google LLC(구 Google Inc)가 controller 역할을 하며, Facebook은 Facebook Inc와 Facebook Ireland가 지역을 구분하여 controller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Facebook Inc	Facebook Ireland
2018. 7. 13. 이전	미국, 캐나다	미국, 캐나다를 제외한 국가(한국 포함)
2018. 7. 14. 이후	유럽을 제외한 국가(한국 포함)	유럽

- Netflix의 경우 국내 법인인 넷플릭스서비스스코리아 유한회사가 직접 개인정보처리자이므로, 이용약관 등에서 넷플릭스서비스스코리아 유한회사가 개인정보처리자로 기재하고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정하였다. 관할법원은 특별히 기재하지 않았으나 넷플릭스서비스스코리아 유한회사가 국내법인이므로 외국적 요소가 없다고 보고 민사소송법에 따라 국내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준거법과 재판관할이 모두 국내법, 국내법원이므로 국제사법적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을 생각된다.

넷플릭스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규정

- 개인정보처리방침: 회원의 개인정보 데이터를 관리하는 업체는 넷플릭스 서비스스코리아 유한회사입니다.³⁴⁾,
- 이용약관: 준거법. 본 이용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을 받고 그에 따라 해석됩니다.³⁵⁾

- 넷플릭스서비스스코리아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특례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넷플릭스서비스스코리아가 수탁자인 미국 넷플릭스에게 데이터를 국외 이전(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2 제2항 후단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없으나 실무적으로는 국외 위탁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있다고 보인다.

2. 외국 기업이 직접 개인정보처리자가 되는 경우 한국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관한 국제사법적 문제

2.1 문제의 소재

- 국내 법인이 직접 개인정보처리자가 되는 넷플릭스의 사례는 예외적인 사례라고 보인다. 구글, 페이스북 등 주요 외국 기업은 온라인에서 직접 국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하고 있고 이들의 국내 자회사는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계없는 광고판매, 마케팅 등의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 국내 정보주체의 입장에서 보면, 정보주체의 열람권, 제3자 제공 내역 요구권, 처리정지권 등을 행사하기 위해 구글, 페이스북 등을 상대로 캘리포니아 주 법원 등의 외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은 송달의 지연, 현지 소송대리인 선임의 어려움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법이다. 또한 이들의 국내 자회사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서 소를 제기하는 방안도 이들 자회사가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처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정보주체 입장에서는 외국 본사와 국내 자회사 중 누가 개인정보처리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들을 모두 공동피고로 하여 국내 법원에 제소한 후 공동피고들의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소장을 수령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된다.³⁶⁾

34) <https://help.netflix.com/ko/legal/privacy>

35) <https://help.netflix.com/ko/legal/termsofuse>

36) 이론적으로는 국내 자회사가 소장을 송달받은 것과 관계없이 외국 본사는 헤이그송달협약에 따라 소장을 송달받는 것으로 진행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공동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후 소송대리인이 외국 본사의 소장도 수령하는 것으로 처리되고 있다.

- 소장이 송달된 후 원고 정보주체는 이용약관 등에서 외국법원으로 합의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외국법으로 지정된 준거법 합의를 극복하여야 한다. 위 문제는 서울고등법원 2017. 2.16. 선고 2015나2065729판결(상고)에서 잘 나타나 있으므로 위 판결을 간략히 살펴보고 관련 쟁점을 논의하기로 한다.

3. 서울고등법원 2017. 2.16. 선고 2015나2065729판결(상고)의 검토

3.1 판결의 주요 요지

3.1.1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의 효력

- 구글 서비스 약관에서 “본 약관 또는 서비스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바바라 카운티의 연방 또는 주 법원에서 다루어진다”고 정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에 대하여, 대법원 2010. 8.26. 선고 2010다28185 판결이 제시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법리에 따라 원고들이 Google Inc.와 합의한 위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을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한국 법원의 전속관할 불인정,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연방 또는 주 법원의 관할권 인정, 동 법원과 문제된 분쟁 간의 합리적 관련성 인정, Google Inc.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서양속 위반 불인정).³⁷⁾

3.1.2 소비자계약에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의 효력

- 소비자계약의 당사자가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국제사법 제27조 제6항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3.1.3 소비자계약에서 외국법으로 지정된 준거법 합의의 효력

- 당사자가 준거법으로 외국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용자가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우리

37) 이종혁, 위의 글, 157면.

나라 강행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그 범위 내에서는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3.1.4. 정보통신망법이 국제사법 제7조의 국제적 강행규정인지 여부

- 정보통신망법의 국제적 강행법규성에 대한 입법자의 의지가 불분명하고 국제사법 제27조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준거법 지정과 관련하여 소비자계약에 관한 강행규정을 별도로 마련해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보통신망법(제30조 제2항, 제4항)은 국제사법 제7조에서 정한 국제적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합의한 계약에 관하여 정보통신망법이 국제적 강행법규로서 적용될 수는 없다.

3.1.5 미국 법률에 의한 개인정보 제공현황 공개청구권의 제한

-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4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으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및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미국 18 U.S.C §2709(c)(1), 50 U.S.C §1861(d)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미국 정부기관이 접근하였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위 법령에 의하여 비공개 의무가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피고 Google Inc는 제3자 제공 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3.1.6 구글코리아의 제공의무자 여부

위치기반서비스의 실질적 제공 주체가 피고 구글 Inc.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들의 내부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피고 구글코리아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신고를 하고, 위치정보법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및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을 하며, '위치정보서비스 및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에 그 서비스 제공 주체를 피고 구글코리아로 표시하면서 '이용자는 한국의 법률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라 위치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 내용에 대하여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기재하는 등 대외적으로 피고 구글코리아를 위치정보서비스 제공자로 표시한 이상, 피고 구글코리아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2호, 제4항에 따른 법률상 의무도 부담할 의사를 명시적·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2 생각해 보고자 하는 점

3.2.1 소속단체명인 ‘aikorea’이 메일계정 아이디에 들어가도록 구글 개인메일 계정을 만든 원고들의 소비자성에 대한 판단

- 위 판결은 구글의 기업메일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원고들 및 자신들이 직업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Amnesty International Korea)의 활동과 관련하여 사용하려는 의도로 그 단체명인 ‘aikorea’를 메일계정 아이디에 포함시킨 원고들에 대해, 이들은 직업활동의 목적으로 구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그에 관한 구글 서비스 이용관계는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이 정한 소비자계약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국제사법 소비자계약의 취지상 ‘소비자’를 수동적 소비자로 보아 그 범위를 엄격히 보아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더라도 특히 소속단체명을 메일계정 아이디에 포함시켜 사용한 원고들에 대해 소비자성을 부인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CJEU의 Maximilian Schrems v. Facebook Ireland Limited 결정은³⁸⁾, 원고가 facebook의 개인정보침해를 주장하면서 소송을 개시한 후 점차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유명인사가 되어서 이와 관련된 책의 출판, 강연, 웹사이트의 개설, 자금의 모집 등의 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활동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활동이란 이유로 원고의 소비자로서 지위에 변함이 없다고 보았다.³⁹⁾ 위 결정은 facebook SNS서비스가 본질적으로 가지는 사적인 성격과 원고와 facebook 간의 불평등한 지위에 주목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단체명이 들어간 구글메일 계정 역시 완전히 업무용도로만 한정하여 메일을 사용하지 않는 한 위 SNS 서비스와 같이 개인적인 소통을 위한 사적인 매체라는 점은 변함이 없고 원

38) Case C-498/16 [2018]

39) 이현목, “국제사법 제27조에 의해 보호되는 소비자계약의 범위와 수동적 소비자가 되기 위한 요건의 분석”, 소비자문제연구, 제49권 제2호, 2018, 209면

피고간의 불평등한 지위가 존재함은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 다만 비교법적 사례로서 참고할 수 있는 CJEU Gruber v. Bay Wa AG 결정은 소비목적과 영업 또는 직업의 목적이 결합된 경우에 영업 또는 직업의 목적이 무시할 정도(negligible)가 아니라면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소비자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적 요소가 지배적(predominant)인지는 관련이 없다고 보았으나,⁴⁰⁾ 위 사건은 40% 가량 부분을 돼지사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지붕타일을 교체하고자 타일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이고 본건은 사람간의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메일서비스이용계약이라는 점에서 계약의 특성이 상이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 무엇보다, 메일서비스이용계약의 소비자계약성을 부인하게 되면 이들 원고들은 Google Inc.에 대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바라라 카운티 법원에 캘리포니아주법을 준거법으로 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채택한 프라이버시보호법인 CCPA(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는 캘리포니아 주민의 개인정보만을 보호하고 있어서 위 원고들은 캘리포니아 주법에 근거하여서는 Google Inc.에 대해 제3자 제공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없다.⁴¹⁾ 이들 원고들에게 국내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부인하게 되면 미국에서도 권리구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2.2 개인정보 제공현황의 공개를 미국 법률에 의하여 제한이 가능하다고 본 부분

- Google Inc.에게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제3자 제공 내역을 공개하라고 명하면서도 미국 법률에 의해 비공개 의무가 있는 사항을 제외한 법적 근거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소에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

40) Case C-464/01 [2005] ECR I-440; 이현묵, 위의 글, 210면

41) CCPA를 대체하는 CPRA(California Privacy Rights Act of 2020, 2023.1.1. 시행)도 캘리포니아 주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만을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동일한 결론에 이른다(소비자를 캘리포니아 거주민으로 한정한다). CCPA는 소비자에게 12개월 내 발생한 개인정보 공개/제공/판매에 대한 사항을 고지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법 제30조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과 피고 구글 Inc. 사이의 준거법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고 원고들과 피고 구글 Inc.의 법률관계에는 기본적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이 적용되므로, 양 법률을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하거나 일반법-특별법 관계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피고는 테러방지, 국가안보 상황에 대응하는 미국 특별법을 위반할 수 없다는 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 그러나 CJEU는 EU와 미국 간의 적정성 결정(Privacy Shield)을 무효화한 Schrems II 판결에서, 미국은 국외정보감시법(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FISA) 제702조과 행정명령 12333(Executive Order 12333) 등에 의해 외국인 정보에 대한 대량 감시(mass surveillance)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은 자사 아일랜드 서버를 통해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미국 본사로 전송하는데 있어서 데이터의 적절한 보호를 보장할 수 없고 현행 미국 법제에서 EU 정보주체의 사법적 권리행사도 용이하지 못하다는 판단을 한 바 있다.

- 그런데 위 항소심 판결에서 비공개 의무가 있다고 본 사항이 바로 국외정보감시법 등에 의해 미국 정부가 수집한 외국인 정보에 대한 접근사실이다. EU는 미국 FISA 등에 의한 외국인 정보의 대량 감시에 반대하여 EU로부터 미국의 정보이전을 금지한 반면(위 Privacy Shield라고 불리는 적정성 결정이 무효로 되었으므로 현재는 SCC, BCR 등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이전한다), 위 항소심 판결의 취지는 미국 정부에 의한 외국인 정보의 대량감시를 수인하면서 오히려 한국 정보주체에게 미국 정부의 정보수집 내역을 비공개할 수 있다는 것이 된다. 이러한 양 판결의 태도에는 인권감수성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된다. 미국 법률에서 비공개 의무가 있는 사항이 한국의 헌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기본적 인권 보호 원칙에 부합하는지 심리,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3.2.3 구글 코리아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을 공개해야 하는 의무자인지 여부

- 구글 코리아가 위치정보서비스 등에서 사업자등록, 신고를 하고 이용약관 등에서 서비스주체로 표시된 것은 애플 아이폰이 도입될 무렵 단지 행정편의적인 이유에서 근거한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법리의 원칙에 따라 구글 코리아가 이용자 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내지 개인정보처리자인지가 심리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제공의무자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 행정상 신고, 이용약관 등의 대외적인 표시만으로 구글 코리아가 정보통신망 법상의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행정상 신고, 이용약관의 표시는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 부분에 대한 판결주문은 “피고 구글코리아 유한회사는 원고들에게 피고 구글코리아 유한회사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원고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라”이다. 만약 구글코리아가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수집·보유한 사실이 없다면 위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러한 정보가 없다고 고지하더라도 위 주문내용을 위반한 것이 아니게 된다. 또한 주문상으로 구글코리아가 구글 Inc.에게 해당 정보를 넘겨 받아서 원고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원칙에 따라 구글 Inc.에게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VI. 결론

(생략)

(끝)

토론문

발표문에 대한 지정토론문

김이경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저에게 전용준 변호사님의 훌륭한 발표에 지정토론할 기회를 주신 회장님, 그리고 많은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 12. 17. EU 집행위원회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에 대해 최종적으로 적정성 결정을 하여 EU 정보주체의 데이터가 우리나라로 역외 이전될 수 있게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향후로 국제재판 관할, 준거법 관련 국제사법적 쟁점을 많이 다룰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여러 국가에 걸쳐 회원을 모집하는 다국적 기업의 경우 전속관할합의조항 및 준거법합의조항을 약관에 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내용은 매우 다양한 것 같습니다.¹⁾ 위와 같은 약관조항의 효력을 판단하는 데 있어 오늘 발표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개인정보 국외이전

GDPR의 경우 제3조 제2항을 통해 위 ②의㉔와 같은 EU 역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외국기업이 직접 수집하는 경우 GDPR의 데이터 처리에 관한 규정이 직접 적용되도록 하는데, 외국기업이 서버를 해외, 즉 EU 역외 지역에 두고 있는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이라고 이해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하 ‘내국 정보주체’라 하겠습니다)의 개인정보가 국외로 나가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① 내국기업이 해외 서버를 사용하여 내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 엔씨소프트의 일부 서비스(도쿄 소재 아마존 서버 이용)

② 외국기업이 해외 서버를 사용하여 내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㉔ 외국기업이 직접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 구글

㉕ 외국기업이 내국기업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 이전받는 경우 : 넷플릭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위 ①과 ②의㉕는 개인정보 국외이전 동의가 필요하고 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국외이전 동의약관을 전자적으로 제공하고

1)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서비스의 무료 사용 부분에는 미국에 소재한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사용권을 구입한 경우에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유한회사와 계약하게 된다는 내용을 두면서, 무료 및 유료 서비스에 대한 모든 문제에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으로 관할을 인정한다는 약관상 분쟁해결조항을 두고 있고, 페이스북의 경우 가입 회원이 소비자인 경우나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상거소지 국가 법률이 적용되나, 그 외의 경우에는 미국 북캘리포니아 지방법원 또는 샌머테이오 카운티에 위치한 주법원에 전속관할이 있고, 준거법은 캘리포니아주 법이라고 약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역외적용조항이 없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위 ②의㉔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직접 적용하지도, 개인정보 국외이전 동의를 요구하지도 않는데 그렇다면 내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공백이 생기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GDPR 제3조 제2항과 같은 역외적용조항을 두기 전에는 이러한 공백을 메꿀 방법이 없을지 발표자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의 국제적 강행법규성

내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는 일부 공익과 관계되고,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사이 계약관계상 힘의 불균형이 있다고 보이는데(특히 전자약관을 통한 계약 체결) 이와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조항을 향후로도 국제적 강행규정을 볼 여지가 없는지 발표자의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최근 입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조항이 2020. 2. 4.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되고 2020. 6. 9. 정보통신망법에는 제5조의2로 역외적용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²⁾

물론,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중 정보통신망법이 보다 공익에 가까운 규범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2020. 2. 4. 이전의 구 정보통신망법도 현행 정보통신망법과 그 목적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이 역외적용조항을 신설한 점까지 고려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도 국제적 강행규정으로 볼 여지가 있을지, 만약 몇몇 개별조항만을 국제적 강행규정으로 본다면 어떤 조항이 이에 해당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내지 개인정보처리자

GDPR은 controller의 정의를, 단독으로 또는 제3자와 공동으로 개인정보처리 목적 및 방법을 결정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공공기관, 기관, 그 밖의 기구

2) 제5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GDPR 제4조 제7호)로 규정하고, 독일 통신미디어법은 역무제공자를 ‘전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정보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그에 기여하는 모든 사람’, 일본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를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대하여 등록 또는 신고한 자’라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GDPR 제4조 제7호 외에 위와 같은 독일, 일본 규정을 보면 자회사인 구글코리아도 구글과 공동으로 개인정보처리의 목적 및 방법을 결정하는 법인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주, 영국, 뉴질랜드의 법원은 구글의 자회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성 게시물 삭제요청에 대하여, 구글 검색결과에 대하여 통제권이나 책임을 갖는 것은 구글 본사일 뿐 자회사가 아니라고 한 바 있습니다. ‘구글 자회사는 구글 검색 엔진의 작동을 운영, 통제 또는 지시하거나, 구글 검색서비스 결과 페이지상의 URL 차단을 통제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조치를 취할 능력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물론 이와 달리 자회사도 당사자가 될 수 있고, 구글과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 해외 사례도 있습니다.³⁾

정보처리와 관련한 책임의 존부, 검색 서비스의 데이터 관리자(Data Controller)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정보처리와 관련한 책임의 전제로 정보처리와 관련된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지, 검색 서비스의 데이터 관리자로서 운영·통제·지시의 권한과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지, 아니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글코리아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이용약관 등에서 서비스주체로 표시한 것을 과연 행정편의적인 이유일 뿐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서비스주체로 표시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을지는 모르나 일단 자신을 서비스주체로 표시한 이상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이 부분에 관하여 발표자의 고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3) 헬싱키법원에서 2018. 8. 17. Personal Data Act 관련 일부 조항에서 Google Finland Oy가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호주연방법원에서도 2021. 4. 16. 데이터를 잘못 이용한 것에 대해 구글과 Google Australia Pty Ltd.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안

사단법인 한국국제사법학회 2022년 정기총회 의안

일 시 : 2022. 3. 31.(목) 20:30

장 소 : Zoom을 통한 비대면회의

사단법인 한국국제사법학회 2022년 정기총회 의안

일 시 : 2022. 3. 31.(목) 20:30

장 소 : Zoom 온라인 회의실

[보고사항]

I. 2021년 사업실적 보고(붙임1. 참조)

[의결사항]

I. 2022년 사업계획 승인

1. 2022년 사업계획(붙임2. 참조)

2. 2022년 학회 운영방안

가. 연구용역

- 신국제사법 시행에 따른 연구용역 등을 법무부 등으로부터 수주

나. 학회지 재인증평가 후속조치

- 각종 규정 제정 등 추진(편집이사)

- 필요시 정기연구회와 함께 임시총회 개최

3. 기타

가. 2023년 학회 창립 30주년에 따른 기념행사 추진

나. 2023년 일본국제사법학회와 제3회 공동행사 추진

II. 2021년 결산 및 2022년 예산 승인(붙임3. 및 붙임4. 참조)

III.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등 선임

1. 회장 선임

2. 감사 선임 :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오승룡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감사로 선임함.

3. 이사 선임 : 구회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사로 선임하고, 정관 제15조에 따라 기타 이사 선임에 관하여 회장에게 일임함.

4. 정관 제15조에 따라 부회장 선임에 관하여 회장에게 일임하고, 집행이사 선임에 관하여도 회장에게 일임함.

IV. 편집위원장 선임

V. 명예회장 추대

붙임1.

2021년 사업실적

1. 연차학술대회

대주제 : 국제도산법제의 동향과 함의 - 개선방안의 모색

주 최 : 한국국제사법학회, 서울회생법원

일 시 : 2021. 7. 1.(목) 13:00 - 18:00

장 소 :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온라인 동시송출)

제1부 : 한국, 미국, 일본, 영국의 국제도산실무

제1주제 : 1997년 UNCITRAL 모델법의 수용에 따른 문제점과 국제도산법제의 개선
방안 - 한국 회생법원의 국제도산 실무를 포함하여

발표자 : 김영석 재판연구관(대법원)

토론자 : 정영진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창권 부장판사(서울회생법원)

제2주제 : 미국과 일본의 1997년 UNCITRAL 모델법의 수용과 국제도산실무

발표자 : 이혜민 판사(서울회생법원), 이상범 판사(서울회생법원)

토론자 : 김시내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이연주 교수(경기대학교 법학과)

제3주제 : 영국의 1997년 UNCITRAL 모델법의 수용과 국제도산실무

발표자 : 임치용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토론자 : 이은재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이석준 판사(서울회생법원)

제2부 : 2018년, 2019년 도산 관련 UNCITRAL 모델법의 수용 방안

제4주제 : 도산 관련 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2018년 UNCITRAL 모델법의 수용
방안

발표자 : 김영주 변호사(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자 : 임선지 부장판사(서울회생법원), 김성인 판사(서울회생법원)

제5주제 : 기업집단의 도산에 관한 2019년 UNCITRAL 모델법의 수용 방안 - EU 도산규정과의 비교를 포함하여

발표자 : 한민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 전범식 판사(서울회생법원), 김일수 판사(서울회생법원)

2. 제10회 한·중 국제사법학회 공동학술대회

일 시 : 2021. 10. 29.(금) 10:00 - 18:30

장 소 : 온라인 개최

주 최 : 한국국제사법학회(KOPILA), 중국국제사법학회(CSPIL) 공동주최

제1부 대주제 : Current Issues in Cross-border Maritime Cases in Chinese and Korean Courts

제1주제 : Current Issues on Cross-border Maritime Cases in Supreme Court of Korea

발표자 : 김윤중 부장판사(대전지방법원)

토론자 : DU Huanfang 교수(중국인민대학)

제2주제 : Maritime Lien and the Related Conflict of Law Issues in Korea

발표자 : 정병석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토론자 : GAN Yong 교수(우한대학)

제3주제 : Applicable Law in Marine Cargo Insurance Contract and Dépeçage

발표자 : 김민경 판사(대전지방법원)

토론자 : PEI Yang 교수(북경사범대학)

제4주제 : Conflicts and Countermeasures: Jurisdiction and Procedure Issues of Cross-border Maritime Insolvency Cases

발표자 : WANG Guohua 교수(상해해사대학)

토론자 : 서동희 변호사(법무법인 정동국제)

제5주제 : Cross-border Maritime Trial in the Context of Covid-19 Pandemic

발표자 : TANG Zheng 교수(우한대학)

토론자 : 이필복 판사(부산고등법원)

제2부 대주제 : Current Issues in the Legislation and Practice of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Chinese and Korean Laws

제1주제 :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Laws

발표자 : 이규호 교수(중앙대학교)

토론자 : XIANG Zaisheng 교수(중남재경정법대학)

제2주제 :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Provision in the Korean Capital Markets Law and Its Implications to Choice-of-law Rules for Prospectus Liability

발표자 : 이종혁 교수(한양대학교)

토론자 : DU Tao 교수(화동정법대학)

제3주제 :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Chinese Laws and Amendments to the Civil Procedure Law

발표자 : HE Qisheng 교수(북경대학)

토론자 : 이세인 교수(부산대학교)

제4주제 : The Exclusion of Renvoi (Remission and Transmission) by Chinese Courts in the Practice of Applying the Chinese PIL Act and the Possible International Harmony Reached Between the Judgments in Civil Matters Rendered by Chinese and Korean Courts in Their Practice of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Laws

발표자 : CHEN Weizuo 교수(청화대학)

토론자 : 장지용 고법판사(수원고등법원)

제5주제 : Extraterritoriality of Chinese Law: Myths, Realities and the Future

발표자 : HUO Zhengxin 교수(중국정법대학)

토론자 : 천창민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3. 국제사법 시행 20주년 기념학술대회

대주제 : 재판례를 중심으로 본 국제사법 20년의 회고와 과제

주 최 : 사단법인 한국국제사법학회

주 관 : 국제사법판례연구회

후 원 : 법무법인(유) 을촌,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소송법센터

일 시 : 2021. 11. 12.(금) 14:00 - 18:00

장 소 :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온라인 동시송출)

제1주제 : 국제계약법 분야 재판례의 회고와 과제

발표자 : 김효정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토론자 : 장지용 고법판사(수원고등법원)

제2주제 : 국제법정채권법 분야 재판례의 회고와 과제

발표자 : 천창민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술경영융합대학)

토론자 : 이의영 고법판사(서울고등법원)

제3주제 : 국제친족상속법 분야 재판례의 회고와 과제

발표자 : 이종혁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 이병화 교수(동덕여자대학교 교양대학)

제4주제 : 총칙 및 국제해상법 분야 재판례의 회고와 과제

발표자 : 이필복 판사(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토론자 : 이철원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4. 정기연구회

(1) 제147회 정기연구회(2020년 대주제 : 국제상거래와 국제사법)

일 시 : 2021. 1. 28.(목) 19:00

장 소 : 온라인 개최

주 제 : 선박건조계약 및 선수금환급보증서상의 준거법을 둘러싼 법적 쟁점

발제자 : 정대 교수(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토론자 : 김나래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2) 제148회 정기연구회(2021년 대주제 : 국제사법(준거법 부문) 개정 연구)

일 시 : 2021. 3. 25.(목) 19:00

장 소 : 온라인 개최

주 제 : 상속법/유언신탁법 분야의 판례 동향과 국제사법 개정을 위한 입법 쟁점

발제자 : 장준혁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 현소혜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 제149회 정기연구회

일 시 : 2021. 5. 20.(목) 19:00

장 소 : 온라인 개최

제1주제 : 국제지식재산권법 분야의 국제사법 개정을 위한 입법론적 쟁점

발표자 : 손경한 변호사(법무법인 화현, 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자 : 김언숙 교수(일본 文京学院大学)

제2주제 : 국제지식재산권법 분야의 우리 판례 동향과 입법론적 함의

발표자 : 이주연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 이규호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 제150회 정기연구회

일 시 : 2021. 8. 27.(금) 19:00 - 21:00

장 소 : 온라인 개최

주 제 : 국제계약법 분야의 국제사법 개정을 위한 입법론적 쟁점

발표자 : 김인호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 오석웅 교수(청주대학교 법과대학)

(5) 제151회 정기연구회

일 시 : 2021. 9. 30.(목) 19:00 - 21:00

장 소 : 온라인 개최

주 제 : 국제해상법 분야의 국제사법 개정을 위한 입법론적 쟁점

발표자 : 정병석 변호사(김 · 장 법률사무소)

토론자 : 정해덕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6) 제152회 정기연구회

일 시 : 2021. 11. 25.(목) 19:00 - 21:00

장 소 : 온라인 개최

주 제 : 법정채권 분야 관련 국제사법 개정 검토 - 주요국 국제사법 규정의 비교를 중심으로

발표자 : 천창민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술경영융합대학)

토론자 : 유영일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5. 국제문화재법연구회

(1) 제39회 정기연구회

일 시 : 2021. 5. 24.(월) 19:00

장 소 : 온라인 개최

주 제 : 영국 항소법원 Iran v. Barakat Galleries Ltd. (2007) 판결의 의의와 한계 -
기원국법상 기득권에 근거한 소유권 인정과 외국공법을 승인 및 집행의
대상으로 보는 접근법

발표자 : 이종혁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 제40회 정기연구회

일 시 : 2021. 9. 27.(월) 19:00 - 21:00

장 소 : 온라인 개최

주 제 :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법적 접근과 과제보는 접근법

발표자 : 서재권 교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관리학과)

6. 국제사법판례연구회

(1) 출범식 및 제1회 정기연구회

일 시 : 2021. 3. 22.(월) 19:00 - 21:00

장 소 : 온라인 개최

주 제 :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에 관한 영국 판례의 흐름

발표자 : 김민경 판사(대전지방법원)

(2) 제2회 정기연구회

일 시 : 2021. 5. 3.(월) 19:00 - 21:00

장 소 : 온라인 개최

주 제 : 유류분의 국제적 강행성 여부와 공서조항에 의한 고려 - 정형화된 취급은 가능한가? - 대상판결 : 프랑스 파기원 2017. 9. 2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9. 7. 선고 2018나2005889 판결

발표자 : 장준혁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 제3회 정기연구회

일 시 : 2021. 8. 2.(월) 19:00 - 21:00

장 소 : 온라인 개최

주 제 : 인터넷 국가관할권의 한계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 Google 판결 및 Facebook 판결의 검토

발표자 : 정선아 변호사(김 · 장 법률사무소)

붙임2.

2022년 사업계획

1. 연차학술대회

대주제 : 신국제사법의 시행과 국제재판관할법제의 과제

주 최 : 사단법인 한국국제사법학회, 법무부, 사법정책연구원

일 시 : 2022. 7. 14.(목)

장 소 : [추후 확정]

[세부주제, 발표자, 토론자 추후 확정]

2. 제11회 한·중 국제사법학회 공동학술대회

일 시 : [추후 확정]

장 소 : [추후 확정]

주 최 : 중국국제사법학회 [한국국제사법학회와 공동주최로 변동 가능]

[세부주제, 발표자, 토론자 추후 확정]

3. 정기연구회

(1) 제153회 정기연구회(2021년 대주제 : 국제사법(준거법 부문) 개정 연구)

일 시 : 2022. 1. 27.(목) 19:00

장 소 : 온라인 개최

주 제 : 국제친족법의 입법론 - 국제혼인법과 국제친자법을 중심으로

발제자 : 이종혁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 정구태 교수(조선대학교 법사회대학)

(2) 제154회 정기연구회(2022년 대주제 : 과학기술·정보기술의 발전과 국제사법)

일 시 : 2022. 3. 31.(목) 19:00

주제 : 개인정보 보호와 국제사법

발표자 : 전용준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토론자 : 김이경 부장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

(3) 제155회 정기연구회

일시 : 2022. 5. 26.(목) 19:00

주제 : 인공지능과 국제사법

발표자 : 김미선 교수(오사카대학)

토론자 : [추후 확정]

(4) 제156회 정기연구회

일시 : 2022. 8. 25.(목) 19:00

주제 : 데이터 법제의 역외적용과 국제사법 - 중국의 데이터안전법과 개인정보보호
법을 중심으로

발표자 : 이상우 박사(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토론자 : [추후 확정]

(5) 제157회 정기연구회

일시 : 2022. 11. 24.(목) 19:00

주제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직접구매와 국제사법

발표자 : 정신동 교수(강릉원주대학교)

토론자 : [추후 확정]

4. 국제문화재법연구회

(1) 제41회 정기연구회

일 시 : 2022. 1. 21.(월) 19:00

주 제 : 남북한 문화재보호법(민법 및 국제사법 포함)

발표자 : 안동인 교수(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 제42회 정기연구회

일 시 : 2022. 4. 11.(월) 19:00

주 제 : 국내환수된 문화재와 NFT

발표자 : 강보영 대표(달팽이AI커뮤니케이션,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3) 제43회 정기연구회

일 시 : 2022. 6. 13.(월) 19:00

주 제 : 영국의 문화재보호법의 최신동향

발표자 : 최재원 박사(한국발명진흥회)

(4) 제44회 정기연구회

일 시 : 2022. 9. 12.(월) 19:00

주 제 : 최근 개정된 독일 문화재보호법의 주요내용

발표자 : 송호영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 제45회 정기연구회

일 시 : 2022. 11. 14.(월) 19:00

주 제 : 미국 문화재법 관련 최신 동향

발표자 : 캐슬린 김 미국변호사(홍익대학교 겸임교수)

5. 국제사법판례연구회

(1) 제4회 정기연구회

일 시 : 2022. 2. 10.(목) 19:00

주 제 : 인터넷 명예훼손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2017년
Bolagsupplysningen 판결 및 2021년 GTFlix TV 판결

발표자 : 이종혁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 제5회 정기연구회

일 시 : 2022. 4. 14.(목) 19:00

주 제 : 국제결혼에서 혼인무효의 준거법 —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트1224 판결

발표자 : 이선미 고법판사(대전고등법원)

(3) 제6회 정기연구회

일 시 : 2022. 6. 9.(목) 19:00

주 제 : 국제소비자계약 재판례 [상세는 추후 확정]

발표자 : 이연 박사(서울대학교)

(4) 제7회 정기연구회

일시 : 2022. 8. 11.(목) 19:00

주제 :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에 관한 영국과 싱가포르 재판례 [상세
는 추후 확정]

발표자 : 한창완 과장/변호사(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

(5) 제8회 정기연구회

일 시 : 2022. 10. 13.(목) 19:00

주 제 : 국제물권법 재판례 [상세는 추후 확정]

발표자 : 유정화 변호사(김 · 장 법률사무소)

(6) 제9회 정기연구회

일 시 : 2022. 12. 8.(목) 19:00

주 제 : 명예훼손 준거법 재판례 [상세는 추후 확정]

발표자 : 천창민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글로벌테크노경영전공)

붙임3.

2021년 결산 및 2022년 예산

1. 2021년 결산

내역	수입	지출
1. 전년도 이월금액	60,282,858	
2. 연회비, 평생회비, 임원분담금	17,650,000	
3. 기부금*	11,500,000	
4. 용역수익	58,181,810	
5. 국제사법연구 저작권료	825,306	
6. 국제사법연구 게재료	2,820,000	
7. 이자	63,957	
9. 학회지 발간(심사료, 우송료 포함)		10,035,560
10. 정기연구회		1,903,000
11. 연차학술대회		3,298,600
12. 한중학술대회		1,335,000
13. 국제사법 20주년 학술대회		2,859,984
14. 국제문화재법연구회		200,000
15. 국제사법판례연구회		600,500
16. 홈페이지 유지보수		264,500
17. 용역 인건비, 경비		44,542,770
18. 법인세, 지방세, 인지대		190,230
19. 운영 경비		986,520
20. 차년도 이월금액		85,107,267
계	151,323,931	151,323,931

* 기부금 내역 : 5,000,000(법무법인 율촌, 3/9), 1,000,000(석광현, 4/14), 2,000,000(장준혁, 8/12), 1,000,000(이규호, 12/31), 1,000,000(천창민, 12/31), 1,000,000(이종혁, 12/31), 500,000(장지용, 12/31)

2. 2022년 예산

내역	수입	지출
1. 전년도 이월금액	85,107,267	
2. 연회비, 평생회비, 임원분담금	15,000,000	
3. 기부금	10,000,000	
4. 용역수익	10,000,000	
5. 국제사법연구 저작권료	500,000	
6. 국제사법연구 게재료	3,000,000	
7. 이자	60,000	
9. 학회지 발간(심사료, 우송료 포함)		12,000,000
10. 정기연구회		2,500,000
11. 연차학술대회		5,000,000
12. 한중학술대회		1,000,000
13. 산하 연구회 보조		1,000,000
14. 이사회, 각종 위원회 개최		2,000,000
15. 홈페이지 유지보수		300,000
16. 용역 인건비, 경비		5,000,000
17. 법인세, 지방세, 인지대		300,000
18. 운영 경비		1,000,000
19. 차년도 이월금액		93,567,267
계	123,667,267	123,667,267

붙임4.

감 사 보 고 서

사단법인 한국국제사법학회 정관 제12조 및 제16조 제4항에 의거하여, 2021회계년도 사단법인 한국국제사법학회의 감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감사사항

- 가. 정관의 이행상황
- 나. 수입·지출 예산의 집행상황

2. 감사결과

- 가. 사단법인 한국국제사법학회의 정관의 이행에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나. 2021회계년도의 기금 관리상황 및 수입·지출 예산의 집행 상황을 감사한바,
 - (1) 수입·지출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 (2) 지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며,
 - (3) 잔액의 보존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22년 2월 21일

감사 이 인 재 (인)

사단법인 한국국제사법학회 귀중

감 사 보 고 서

사단법인 한국국제사법학회 정관 제12조 및 제16조 제4항에 의거하여, 2021회계년도 사단법인 한국국제사법학회의 감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감사사항

- 가. 정관의 이행상황
- 나. 수입·지출 예산의 집행상황

2. 감사결과

- 가. 사단법인 한국국제사법학회의 정관의 이행에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나. 2021회계년도의 기금 관리상황 및 수입·지출 예산의 집행상황을 감사한바,
 - (1) 수입·지출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 (2) 지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며,
 - (3) 잔액의 보존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22년 2월 21일

감사 오승룡 (인) 

사단법인 한국국제사법학회 귀중